



예시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받은 경우

* 월 기준시간
 $[(\text{주당 소정근로시간 } 40\text{시간} + \text{유급주휴 } 8\text{시간}) \div 7 \times 365] \div 12\text{월} \approx 209\text{시간}$

☞ 시간당 임금 = $100\text{만원} \div 209\text{시간} \approx 4,784\text{원}$
 시간당 임금 4,785원은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4,860\text{원} \times 209\text{시간} = 1,015,740\text{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근로자(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중)가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4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105만원을 받은 경우

* 월 기준시간
 $[(\text{주당 소정근로시간 } 44\text{시간} + \text{유급주휴 } 8\text{시간}) \div 7 \times 365] \div 12\text{월} \approx 226\text{시간}$

☞ 시간당 임금 = $105\text{만원} \div 226\text{시간} \approx 4,646\text{원}$
 시간당 임금 4,646원은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4,860\text{원} \times 226\text{시간} = 1,098,360\text{원}$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31-0009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02)2639-2110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02)584-0009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02)950-9714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02)403-0009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02)3281-3282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02)2077-6114		

중부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00	안산고용노동지청	031)486-0009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032)540-7910	평택고용노동지청	031)617-9010
부천고용노동지청	032)714-8700	강원고용노동지청	033)258-3562
의정부고용노동지청	031)850-7771	강릉고용노동지청	033)650-2500
고양고용노동지청	031)931-2801	원주고용노동지청	033)769-0832
경기도고용노동지청	031)259-0211	태백고용노동지청	033)552-8601
성남고용노동지청	031)788-1505	영월고용노동출장소	033)371-6220
안양고용노동지청	031)463-7300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10	울산고용노동지청	052)228-3812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051)559-6600	양산고용노동지청	055)387-0802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051)309-1575	진주고용노동지청	055)752-5701
창원고용노동지청	055)239-6520	통영고용노동지청	055)650-1930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10	구미고용노동지청	054)450-3500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053)605-9010	영주고용노동지청	054)639-1111
포항고용노동지청	054)271-6700	안동고용노동지청	054)851-8012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200	군산고용노동지청	063)450-0510
전주고용노동지청	063)240-3400	목포고용노동지청	061)284-0009
익산고용노동지청	063)839-0009	여수고용노동지청	061)650-0109

대전고용노동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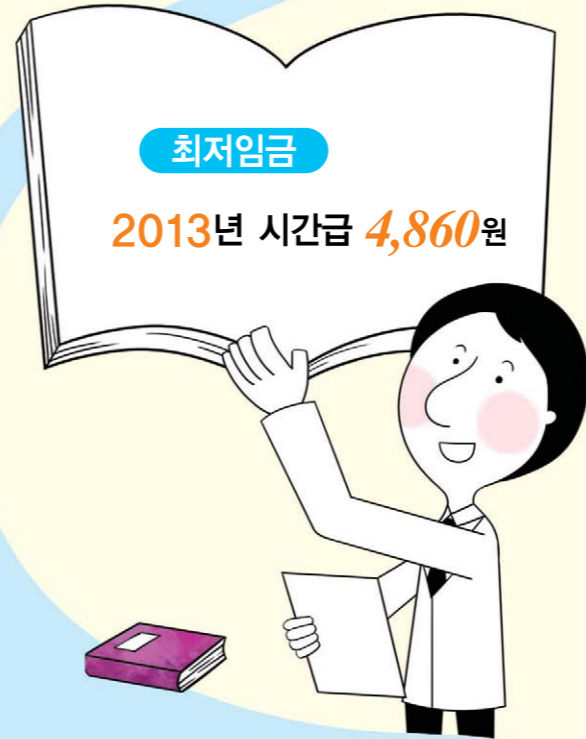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12	충주고용노동지청	043)840-4000
청주고용노동지청	043)299-1114	보령고용노동지청	041)930-6138
천안고용노동지청	041)560-2800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02)541-1495

www.moel.go.kr
www.minimumwage.go.kr

201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 Wage Council

나의 임금, 최저임금 미달 여부 알아보기

예시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

- ◆ 1시간에 4,60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 1시간에 4,90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준수임

참고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시간급 4,900원에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서 5일 동안 2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20시간에 대한 임금 = 117,600원
 •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900\text{원} \times 20\text{시간} = 98,000\text{원}$
 • 유급주휴수당 = $4,900\text{원} \times \text{유급주휴시간} 4\text{시간} = 19,600\text{원}$
 * 유급주휴는 사업주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 법에 의해 부여받는 유급휴일로서 해당 유급휴일의 유급주휴시간은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 주5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은 8시간임

예시

임금이 일급인 경우

- ◆ 1일 임금 36,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기준)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 시간당 임금 산정 : $36,000\text{원} \div 8\text{시간} = 4,500\text{원}$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참고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일급 4만원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 5일 동안 4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5일 40시간에 대한 임금=240,000원
 •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5,000\text{원} \times 40\text{시간} = 200,000\text{원}$
 (시간당 임금=일급4만원 /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5천원)
 • 유급주휴수당 = $5,000\text{원} \times \text{유급주휴시간} 8\text{시간} = 40,000\text{원}$



최저임금 알아보기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매년 심의·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매년 결정되는데,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860원입니다.

다만 아래의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10%를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 ▶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100% 적용합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3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 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선원(선원법 적용)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낸 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산정 (5번 참조)
- 2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준시간)
* 월 기준시간은 '(예시)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참조
- 3 환산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를 참조하세요.

5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및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②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6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및 수당은?

-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해당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포함)
- 3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현물 등으로써 최저임금에 미포함)

7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화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등의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권리구제는 사업장이 소재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전화번호 뒷면참조)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